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1	1/7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5-01-17		

목 차

1. 목적
2. 적용범위
 - 2.1 임직원의 의무
3. 용어의 정의
4. 조직 및 책임과 권한
 - 4.1 최고경영자의 지원
 - 4.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
 - 4.3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
 - 4.4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
 - 4.5 자율준수협의회 구성
 - 4.6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및 역할
 - 4.7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선임과 역할
5. 업무 절차
 - 5.1 자율준수 의지선언
 - 5.2 CP의 운영
 - 5.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·활용
 - 5.4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5.5 현업부서의 공정거래 자율점검
 - 5.6 공정거래 모니터링
 - 5.7 위험성평가
 - 5.8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
 - 5.9 상담, 신고 및 신고자 보호
 - 5.10 제재 및 포상
6. 기록 및 관리
 - 6.1 문서의 관리
7. 서식종류 및 작성방법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1	2/7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5-01-17		

제 1 조 목적

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 PH 솔루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적용범위

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,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2.1 임직원의 의무

-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와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함에 있어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CP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3 조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시행령, 고시, 지침을 말한다.
- ② 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”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직원 교육,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(이하 “CP” 라 한다.)
- ③ “자율준수관리자”란 회사 직책보임자(실장, 국장, 그룹장) 중 CP 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.
- ④ “자율준수협의회”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·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- ⑤ “담당부문”이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·감독하는 실 단위 소속부서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⑥ “CP 주관부서”라 함은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 4 조 조직 및 책임과 권한

4.1 최고경영자의 지원

-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직무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.
- ③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 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1	3/7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5-01-17		

4.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 임직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또는 자율준수협의회 간사가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.

4.3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직무 수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의식을 토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,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.
- ④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,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,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4.4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 1. CP 기획, 운영 및 감독
 2. CP 평가·개선 및 운영현황 보고
 3. 자율준수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
 4.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기준 및 제도 마련
 5.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등
 6. CP 활동 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
 7.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포함한 준법경영 지원활동을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준법지원인을 겸임할 수 있다.

4.5 자율준수협의회 구성

자율준수협의회는 5명 내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. 단, 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와 관련이 높은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주관부서의 구성원 중에서 자율준수협의회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- ③ 간사는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1	4/7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5-01-17		

4.6 자율준수협회의의 운영 및 역할

- ① 자율준수협회의는 반기 단위로 1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, 2 인 이상의 위원 요구시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 1.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,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, 자문
 2.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
 3. 위원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,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
 4. 각 위원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
 5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

4.7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선임 및 역할

- ① 자율준수협회의 위원은 담당부문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임명한다.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해당부서에서 2 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선임할 것을 권장한다.
-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회의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
 1. 자율준수협회의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
 2.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
 3. 부서 내 자율점검 활동 주관
 4.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

제 5 조 업무 절차

5.1 자율준수 의지선언

-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 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 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되어야 한다.

5.2 CP 의 운영

- ① CP 주관부서는 CP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, CP 활동내역을 반기 1 회 이사회(ESG 위원회)에 보고해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CP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5.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·활용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1	5/7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5-01-17		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고, 주기적(연 1 회 이상)으로 개정하며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5.4 교육프로그램 운영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, 하여야 한다.
 1. e-러닝 과정을 이용한 on-line 교육
 2. 각 부서별,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-line 교육
 3. 공정거래 캠페인 및 뉴스레터
 4.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
 5.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 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
-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, 의무 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CP 주관부서는 의무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미이수자는 공정거래 관련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하여 확인된 개선사항을 사항을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.

5.5 현업부서의 공정거래 자율점검

- ① 임직원들은 일상 업무 시 편람의 자율점검 Check list 를 활용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 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점검 결과 법위반 가능성이 높거나,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등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.

5.6 공정거래 모니터링

- ①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문(부서)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, 사내 감사부서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한다.

5.7 위험성평가

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, 적합한 방법으로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① 위험성평가는 반기 1 회 실시하고, 리스크 등급은 상, 중, 하 3 단계로 구분한다.
- ②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, 리스크 등급이 '중' 등급 이상의 경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, 해당 리스크를 관리한다.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1	6/7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5-01-17		

- ③ 위험성평가 관련사항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 위험성 식별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.

5.8 CP 운영의 효과성평가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, 절차, 운용 등에 대한 점검,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를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CP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5.9 상담, 신고 및 신고자 보호

- ①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- ② 각 부서 공정거래 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 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.
- ③ 상담요청인은 상담 전 공정거래 웹사이트, 모바일 앱, 자율준수 편람 등을 통한 자율점검을 먼저 실행한 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.
- ④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⑤ 상담인은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- ⑥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⑦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,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.
- ⑧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, 신고자의 신분 누설,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,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.

5.10 제재 및 포상

- ①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 CP 주관부서나 이를 인지한 부서 책임자는 징계 주관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부서 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의 징계요구는 내부감사 지침에 따르고,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취업규칙 및 상벌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- ③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민·형사상 제재로 벌금을 부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 포상하거나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- ⑤ 포상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제 6 조 기록 및 관리

6.1 문서의 관리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1	7/7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5-01-17		

-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 년간 보관되어야 한다.
- ② 본 지침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.

제 7 조 서식종류 및 작성방법

해당없음.

. 마침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. 6.1 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이 지침은 2024. 8.14 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이 지침은 2025. 1.17 부로 개정, 시행한다.